선개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구명		대덕구	
후보자명	정용기	לַוּר	1	소속 정당명		새누리당
궁약번호: 1	궁약 제목 : 지역개	l발공약				

O 목 적 : 대덕구의 시급한 현안사업(SOC사업 포함) 해결을 통해 대덕구민의 생활에 '삶의 질'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O 내 용

- ▲ 대덕구와 대전 전체의 가장 큰 현안인 도시철도2호선 문제와 연계된 충청권광역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 대덕구 연축동 일원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 대덕구는 신탄진의 북쪽생활권과 남쪽생활권이 양분되어 도시공간구조가 기형적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식까지도 괴리현상을 보임.
 - 대덕구가 하나의 도시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역인연축동 지역에 대한 개발이 반드시 필요

▲ 회덕IC 신설

- 포화상태의 신탄진IC 문제 해결
- 대전산업단지 및 대덕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이동
- ▲ 둔산 샘머리 지역과 대화동을 연결하는 교량건설 대덕구 신대동과 유성구 문지동을 연결하는 교량건설을 통해 대전 서부지역으로의 편리한 교통로 확보
- ▲ 장동의 탄약창 이전을 위한 단계적 접근
- ▲ 로하스 금강프로젝트 완성
- ▲ 오정동 분뇨처리장 이전
- ▲ 대전산업단지 및 대덕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삶의 질'개선
- ▲ 회덕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

O 재정조달방안

- 이 공약사항은 대덕구의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통해 지역의 생활에 '삶의 질'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재정수반요인이 있음
- 재원조달방안은 대덕구의 현안사업으로 시급함과 중대성을 강조, 단기적·장기적으로 정부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통해 조달

선거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구명		대덕구	
후보자명	정용기	סַׁור	1	소속 정당명		새누리당
공약번호: 2	궁약 제목 : 주민생활행복지수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입법적 지원					

O 목 적 : 국민 전체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도시농업, 생활체육, 평생학습 등 실질적 주민생활행복지수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입법적 지원

O 내 용 : 관계법령의 보완 개정 및 제정 (관계법률 예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선진국에서 도시환경 개선, 녹화의 효과, 정서순화, 공동체 회복에 커다란 역할
-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의 유휴지 면적과 같은 기초 자료마저 부족 지원이 분산되어 효율성이 하락. 이에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을 통해 자연친화적 저탄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정서순화 도시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

▲ 생활체육진흥법안

- 전국 3백7십만 명의 회원을 보유, 한해 7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 국민체육단체로 성장한 국민생활체육회의 위상에도 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음.
-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필수과제
- 이에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기여

▲ 평생교육법

○ 중앙과 지방의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연계 및 평생교육 지원 인프라가 미흡, 평생교육사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 행정기관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평생교육진흥계획에 연계성을 부여함으로 평생교육사업이 일관되고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고 평생교육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평생교육전담공무원제도를 신설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인적인프라를 구축,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 함

O 재정수반요인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3호(의안이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선거명	국회의원보궐선거		선거구명		대덕구	
후보자명	정용기	סַור	1	소속정당명		새누리당
공약번호: 3	궁약 제목 : 투명하고	! 궁정안	정치 구현			

O 목 적: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 공정한 기회의 나라,

통합과 희망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구현

O 내 용

▲ 정당의 당내 민주화

- 과거 우리나라의 정당은 1인 지배 또는 과두제적 이었음
- 정당의 민주화 없는 정치발전은 생각할 수 없음
- 정당 민주화의 요체는 공천의 민주화임
- 정당의 당내 민주화 실현을 위한 아래와 같은 구체적 노력을 할 것임
 - ① 정당자치규정(당헌·당규)이 제·개정 시 당원의 참여 폭 확대
 - ② 정당 내부가 상향식으로 조직될 것
 - ③ 당원의 입당, 탈당, 당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 평등한 투표권, 당직취임의 균등한 기회, 자의적인 징계를 받지 아니할 법적 지위 보장
 - ④ 가장 중요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공천이 민주적일 것 등

▲ 대한민국의 투명성 지수 제고

- 사회적 자본인 '신뢰'는 공동체 통합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반드시 요구됨
- 대한민국의 정치나 행정이 투명하지 못해서 벌어진 사고
-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 상향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의국가 투명성 강조는 필수
- 대한민국의 투명성 지수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 지표관리 대책마련

O 재정수반요인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3호(의안이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선거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구명		대덕구	
후보자명	정용기	סַׁוּר	1	소속 정당명		새누리당
궁약번호: 4	궁약 제목 : 안전한 대	한민국				

O 목 적 : 안전한 대한민국

O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응능력 강화

- 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초동대응, 현장의료 대응능력과 사고접수 및 상황전파 대응역량 제고
-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고발생시 실제적인 대응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훈련의 지속적 실행
-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상황실 가동, 현장지휘관의 대응력 제고 및 지휘권 이양, 실효성 및 연계성 점검,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강화 훈련의 지속적 실행

▲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등에 예산 지원 확대

○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등의 실질적 역할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 평생교육과 연계해 국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시스템 구축

- 세월호 참사의 실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국민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안전 문제를 생명존중과 인권에 대한 의식을 새로 정착해 국민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사전교육시스템 구축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문화 확립방안 등

O 재정조달방안

- 이 공약사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있습니다.
- 재원조달방안은 단기적·장기적으로 정부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통해 조달

선거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구명		대덕구	
후보자명	정용기	סַור	1	소속 정당명		새누리당
공약번호: 5	공약 제목 : 분권 - 중약	앗에 집중	된 권한의	이야 . [보산	

O 목 적 : 중앙집권이 과거 국가의 시대에 적합한 행정 패러다임 이었다면 지방분권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패러다임 으로 바뀌어야 함

O 내 용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의 보완 및 개정

- 분권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행정기능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방자립, 자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
-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의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협의가 전무
-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구민주주의의 발전을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집중경향이 매우 높아 지방정부의 불신은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분권화의 계획·조직·통제·조정 등의 업무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해 이론적 관점과 여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양상
- 지방재정법 등의 보완 및 개정을 통한 분권의 실현
- 지방자치법 등의 보완 및 개정을 통한 분권의 실현

▲ 지방정부로의 예산 및 권한 이양을 위한 의정활동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모두 80대 20의 수준
- 지방정부의 조세권 강화를 위한 입법지원

O 재정수반요인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3호(의안이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